

아니한다 해서 했는데 지금 金委員님 말씀하신대로 錯誤 없도록 해서 구체적으로 明記를 하겠습니다.

(朴泰源 委員長, 申龍吉 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申龍吉 林翼根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翼根委員 垜地와 道路의 接點이 2m 이하인, 물론 法律上으로는 垜地가 안 되겠죠, 法에서는 2m 이상이어야 되니까. 그런 垜地, 사실상의 垜地인데 道路와의 接點이 2m 이하인 경우에는 建築許可 안 내주겠다는 것입니까?

○住宅局長 梁 甲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道路 幅이 2m, 3m 작은 것도 각각 規定이 있는데 막다른 道路規定이나 通過規定해서 道路中心線에서 얼마 때기는 하는데 許可는 나가는데 지금 2m 미만인 道路가 있습니다. 住居環境改善地區內에, 2m 되는 데는 그대로 놔 두고 한다면 거기에 이삿짐차 運搬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최소한 2m 안 되는 道路를 2m 確保하도록 住居環境改善計劃用役을 세울 때 골목길 좁은 데 2m도 안 되는 데는 2m로 만들어서 改善計劃을 樹立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林翼根委員 그러니까 小規模 住居環境改善事業에 막다른 골목길에, 말하자면 그런 筆地들이 있을 경우에 2m 幅이 안 돼서 끝에 가서 垜地가 있다 이런 경우에 建築許可 不許는 아닙니까?

○住宅局長 梁 甲 建築許可는 나가는데 住居環境改善事業을 할 때는 市에서 投資를 해서 하니까 2m 안 되는 道路는 2m를 만들면서 몇 십 cm 들어가면 그것은 補償을 해 주고 2m로 道路를 確保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정도는 해 줘야 住民들이 나중에 이삿짐도 운반하고 하니까.

○林翼根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申龍吉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서울特別市住居環境改善事業施行條例中

改正條例案을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건축물에 대하여 도로폭 2m 이상일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도로폭 2m미만일 경우에는 2m이상 확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1조중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호의”를 “제53조의”로 한다.

제25조중 “건축물에”를 “연면적 300㎡미만 건축물에”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리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선지정 및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구지정된 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7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호가목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2층이하의 다세대주택은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4배이하

3. '95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2時 50分)

○委員長代理 申龍吉 議事日程 第4項 95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